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07호 2014. 8.12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5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0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4-61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고시(하곡소류지) 4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528호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공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4-531호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6
- 하동군 공고 제2014-53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
- 하동군 공고 제2014-53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14-53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2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4-5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0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3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11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07 호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접수구분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727-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11	2009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31-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348-20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두곡리 6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산복1길 6	20070618	산복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31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141-4	20070618	이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478-5, 147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30-25	200706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9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34	20070702	하동군 옥종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70	20080402	큰 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88-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뿔길 30-3	20080402	중평마을 뿔편으로 있는 길이라하여 중평뿔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두곡리 10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서재길 32-170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8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2길 16-2	20090302	전도라는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666-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95	2009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81-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90	20090702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수곡면을 잇는 도로로 "옥종"과 "수곡"의 첫자를 혼용하여 도로명으로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산8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우리길 61	20091229	중촌 서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하동군 고시 제2014 - 61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댐을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수혜 면적 (ha)	총 저수량 (천m ³)	제당 (m)			
				연장	높이		
하곡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리 16번지 일원	20.0	70.3	93.0	34.0	하동군	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2014년 8월 4일

하동군 공고 제2014-528호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된 자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공고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4.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4. 7. 30.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2필지

(단위 : 원/㎡)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당초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화개면 덕은리 816-47	대지	78,100	125,300	
2	화개면 덕은리 839	공장용지	142,400	149,600	
3	화개면 운수리 384-17	전	117,100	107,300	
4	화개면 용강리 833	임야	2,100	3,980	
5	화개면 용강리 834	임야	2,100	3,980	
6	화개면 용강리 835	전	4,100	4,460	
7	화개면 용강리 836	임야	2,170	4,100	
8	화개면 용강리 837	임야	2,170	4,100	
9	화개면 용강리 838	임야	2,170	4,100	
10	화개면 용강리 839	임야	2,100	4,100	
11	화개면 용강리 산8	임야	450	3,250	
12	진교면 진교리 375-1	대지	137,100	106,100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7 월 30 일

하 동 군 수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시거나 하동군 및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제출 가능.

○ 열 략

- 기 간 : 2014년 8월 1일 ~ 8월 20일
- 장 소 : 하동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4년 8월 1일 ~ 8월 2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재무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함.
 - ☞ 하동군 홈페이지 : 건축토지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 ☞ 경남도청 홈페이지 : 토지정보 ⇒ 민원안내 및 신청 ⇒ 의견서 제출
 - ※ 로그인 후 입력 가능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4. 9. 24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4. 7. 31

하 동 군 수

(별지 제1호)

가 격 열 램 부

지역명 :

일련 번호	소재지	본 번	부 번	전체면적(m ²)		공시면적(m ²)		주건물 구조	가 격	비 고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 대지 면적	(산정) 건물 연면적			

하 동 군 공 보

(8) 제 407 호

(별지 제3호)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m ²)
	용도지역	건물연면적(m ²)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하동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845호 주택을 표준주택로 선정하고 2014. 1. 1기준으로 8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하동군(경남도)홈페이지 건축토지정보(토지정보) 내의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셔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14. 4. 18까지 통지하게 됩니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407 호

(별지 제5호)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처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소재지	③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④ 산정 가격	⑤ 검증 가격	⑥ 열람 가격	⑦ 의견 가격	⑧ 의견검증 가격	⑨ 부 평 위 조정가격

하동군 공고 제 533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7 월 31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나. 도 외 소재공장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하는기업이 지원대상이나
군 외 소재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다. 현 조례의 제한적인 지원대상을 삭제하여 우리군내 기업으로 대상 확대
하여 군민 고용창출 기여

3. 주요 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808(2013. 5. 2)호 개선권고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하 동 군 공 보

(12) 제 407 호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

나)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제21조, 제23조)

-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시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 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시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 제한 조항 삭제(제30조)

- 신규기업의 인력 고용 확대로 군민 일자리창출 도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055-880-2202,

FAX 088-880-2199, e-mail yg4616@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2. 개정안
3. 신규조문대비표,
4.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14) 제 407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1조 제3항 중 “도”를 “군”으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중 “도”를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를 “군”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u></p> <p><u>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u></p> <p><u>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p> <p>① (생략)</p> <p>1.(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군내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 외에-----</p> <p>-----</p> <p>-----</p> <p>-----</p>
<p>제23조(도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지원)</p> <p>①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공장 시설물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3조(군외 기업의 본점등 이전지원)</p> <p>① 군 외에-----</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6) 제 407 호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지원대상 및 제한)</p> <p>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하동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지원대상 및 제한)</p> <p>①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 참고사항

1. 경상남도조례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2.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통합관리기금 일 반 회 계 재 정 용 자 관 리 강 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지 방 자 치 단 체	'13. 10.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	'13. 04.
② 기금 보조사업 재 정 지 원 및 집 행 · 관 리 강 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행 정 안 전 부	'13. 0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보조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
③ 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강 화 및 이 해 충 돌 방 지 규 정 마 련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보조금 포함 명시)	지 방 자 치 단 체	'13.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행 정 안 전 부	'13. 10.
	개별기금 설치조례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 방 자 치 단 체	"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하동군 공고 제2014-53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민선6대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 설계 필요
 - 군정철학 「실천중심, 현장중심, 사람중심」을 반영한 조직개편
3. 주요 골자
 -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대강 개정(안 조례제3조)
 - 핵심부서 직제 조정 : 문화관광실, 주민복지과
 - 성장동력, 현장·실천기능의 실과의 직제순서 전진배치
 - 유사중복기능 사무 통폐합(조정) : 슬로시티, 도로명주소, 녹색성장, 도시디자인, 녹지조경, 녹차연구소지원
 - 현장·실천기능 사무 신설(강화) : 문화재, 산림휴양, 가로수공원, 지적재조사, 신재생에너지, 민방위비상대책, 농기계지원
 - 사무 재조정 등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

- 통상교류과→국제통상과, 녹색환경과→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농축산과
-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
 - 주민복지실(아동청소년)→행정과(아동청소년)
 - 농촌사회과(농업지원)→소득지원과(농산지원)
- 한시기구(남해안개발과)의 분장사무 조정(안 조례제3조의3)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국제통상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14년 8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borisu656@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을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획감사실

-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실

-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라. 관광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과

- 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만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제수산과

-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과

- 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복지대책 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 바.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6. 행정과

-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 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마.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민원과

-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2) 제 407 호

8. 재무과

-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 다.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녹지과

-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교통과

-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제통상과

-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 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다.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호과

-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 나.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건축과

-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다.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3 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
2. 부농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7.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
11.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u> 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u> 를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가.~라.(생략) 마. <삭제> 바. <삭제> <u>사.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 <삭제></u> 2. 주민복지실 가. ~나.(생략) 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의료급여 자격관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라.~바.(생략) 사.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3. 민원과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나. <u>지적업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u>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삭제></u> 라. <u>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u> 4. 행정과 가. 정원, 인사, 선거 및 읍면기능전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나.~라.(생략)	제3조(실·과의 설치)②(현행과 같음) 1. 기획감사실 가.~라.(현행과 같음) <u>마.~사. <삭제></u> <u>5. 주민복지과</u> 가. ~나.(현행과 같음) <u>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u> 라.~바.(현행과 같음) <u>사. <삭제></u> 7. 민원과 가.(현행과 같음) <u>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u>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u> <u>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6. 행정과 가. <u>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u> 나.~라.(현행과 같음) <u>마.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5. 문화관광과</p> <p>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p> <p>나. <삭제></p> <p>다. 관광진흥에 관한사항</p> <p>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p> <p>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u>2. 문화관광실</u></p> <p>가. <u>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p> <p>나. <u>문화재에 관한 사항(신설)</u></p> <p>다. <u>관광개발에 관한 사항</u></p> <p>라. <u>관광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사항</u></p> <p>마. (현행과 같음)</p>
<p>6. 경제수산과</p> <p>가.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p> <p>다.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p> <p>라.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u>4. 경제수산과</u></p> <p>가. <u>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u></p> <p>나. <u>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u></p> <p>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p> <p>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7. 도시건축과</p> <p>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p> <p>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삭제></p> <p>라.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p> <p>마.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p> <p>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p>	<p><u>13. 도시건축과</u></p> <p>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p> <p>다. <u>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p> <p>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p> <p>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p>
<p>8. 재무과</p> <p>가.~마.(생략)</p>	<p>8. 재무과</p> <p>가.~마.(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26) 제 407 호

현 행	개 정 안
<p>9. 통상교류과</p> <p>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p> <p>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p>	<p><u>11. 국제통상과</u></p> <p>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p> <p><u>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신설)</u></p> <p><u>다.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u></p> <p><u>라.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u></p>
<p>10. 산림녹지과</p> <p>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p> <p>다. <u>임산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u></p> <p>라. <u>푸른하동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9. 산림녹지과</u></p> <p>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p> <p><u>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u></p> <p><u>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신설)</u></p> <p><u>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11. 안전총괄과</p> <p>가. 안전·재난관리, <u>민방위 및 120기동대에 관한 사항</u></p> <p>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p> <p>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u>3. 안전총괄과</u></p> <p><u>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u></p> <p><u>나.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만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신설)</u></p> <p><u>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u></p> <p><u>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12. 건설교통과</p> <p>가.~라.(생략)</p>	<p><u>10. 건설교통과</u></p> <p>가.~라.(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13. 녹색환경과</p> <p>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u>나.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삭제></u></p> <p>다.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p> <p>라.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p>	<p><u>12. 환경보호과</u></p> <p>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u>기후 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u></p> <p><u>나.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u></p> <p><u>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u>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p>
<p>제3조의3(한시기구)(생략)</p> <p>1. 남해안개발과</p> <p>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p> <p>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p> <p><u>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외 투자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u></p> <p>라.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p> <p>마.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p>	<p>제3조의3(한시기구)(현행과 같음)</p> <p>1. 남해안개발과</p> <p>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p> <p>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p> <p><u>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u></p> <p><u>라.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u></p>

하 동 군 공 보

(28) 제 407 호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소관사무)(생략)</p> <p>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p> <p>2. 부농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p> <p>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 한 사항</p> <p>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p> <p>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p> <p>6. 농업지원 및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사항</p> <p>7.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p> <p>8.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 한 사항</p> <p>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10.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p> <p>11.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p> <p>12.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 급에 관한 사항</p>	<p>제9조(소관사무)(현행과 같음)</p> <p>1.~5.(현행과 같음)</p> <p>6.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p> <p>7.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 한 사항</p> <p>8. <u>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신설)</u></p> <p>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p> <p>10. <u>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u></p> <p>11.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p> <p>12.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p> <p>13.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 급에 관한 사항</p>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7.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개정이유

- 민선6대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 설계 필요
- 군정철학 「실천중심, 현장중심, 사람중심」을 반영한 조직개편

2. 주요내용

- 성과단장의 직급 조정(안 제3조)
 - 문화관광실장 :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주민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성과단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의 별표 1)
-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 및 장의 명칭 변경(안 제8조)
 - 농업정책과(장)→농축산과(장)
-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9조의 별표 2)

3. 조치사항

- 입법예고 : 2014. 08. 01.~ 08. 10.
- 의원간담회 : 2014. 08. 05
-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제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8조 제1항의 본문 중 “농업정책과”를 “농축산과”로 한다.

제8조 제2항의 본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단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단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다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32)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실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하동송림 생육환경개선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라	관광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관광여행업,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
	5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공동브랜드 관리
	리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및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만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6	농어촌 기로·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5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6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7	공유수면(내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34)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 과장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업자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4	공산품 품질관리 및 물가관리
	5	지식재산권 업무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승강기 및 계량기 업무
	5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6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8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과장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라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눔미 빨래방 운영

하 동 군 공 보

(36)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복지 과장	마	노인복지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관리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바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하 동 군 공 보

(37)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장금고 운영
	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6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7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8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9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하 동 군 공 보

(38)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사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및 통합 D/B 지원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하 동 군 공 보

(40)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재무과장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2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3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4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5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2	세외수입원 발굴 및 과징업무 지도감독
	3	국세 관리 및 이체
	4	금고관리 및 수납 대행점 관리
	5	세입정리 및 세입결산
	6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7	체납세 징수
	8	공매의뢰 및 체납처분
	9	결손처분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산림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중요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입목벌채 허가, 신고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4	숲 가꾸기 사업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7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원조성 및 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5	군립공원 관리
	6	학교숲 조성 업무

하 동 군 공 보

(42)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4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5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6 정주권 개발사업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 농림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과명	분장사무
국제통상 과장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4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
	6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다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원봉사 계획수립 및 시행
	2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
	3 각종 사회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
	4 주민소득 지원
	5 대내외 교류 협력업무
	6 자매결연 총괄 계획 및 추진
	라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하 동 군 공 보

(44)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환경보호 과장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나 대기·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온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9	경관개선사업 추진
	1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라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하 동 군 공 보

(46)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남해안 개발과장	가	남해안시대추진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동서통합지대조성 총괄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남해안보상에 관한 사항	
1	남해안시대 및 여수세계박람회,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규제개혁 추진단	가.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별표 2]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 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나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1 건강증진사업
	2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3 국가암 조기검진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 지역사회 건강조사
	6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7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출산장려시책 지원
	8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9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10 저출산 고령화 대책
	11 출산장려시책 지원
	12 33헬스 프로젝트(폐암검진, 자궁경부확대촬영사업)
	다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방역소독 사업
	3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접종 사업 및 결핵 관리
	7 신종전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전염병 관리 웹 보고
	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0 결핵관리
	11 장기이식 등록 관리
	12 기생충퇴치사업
	13 성병, 에이즈 등 관리
	14 해하수 관리

하 동 군 공 보

(48)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라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영양,운동,비만,절주)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당뇨,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8	모자보건사업
	9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10	경로당 방문진료
	1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2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3	치매관리사업
	14	한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5	노인의치보철사업	
마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의료보험보호 청구 업무
바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실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가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보전 직불제
	7	지방혁신계획수립 및 추진
	8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부농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	농업경영 개선지도
	2	농작물별 소득 조사 분석
	3	농업경영 컨설팅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5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도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재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하 동 군 공 보

(50) 제 407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사회 과장	가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업인 학습단체 및 후원회 육성 지도
	2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3	최고농업경영자 육성지도
	4	귀농인 관리 및 지도
	5	한국 농업 전문학교 졸업생 관리 지도
	6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7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8	농민회 육성 지도
	9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추진
	10	농업인 교육훈련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관광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소비자 농업 육성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5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6	과학영농시설 운영
	7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8	살기 좋은 마을(명품 마을) 가꾸기 사업
	다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보급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라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실과명	분장사무	
소득지원 과장	가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대상(평가) 및 친환경 우수농가 포상
	3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4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5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6	친환경농업 직불제
	7	도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나	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대책
	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5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6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다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사항
	1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2	벤처농업 육성
	3	농·특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
	4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5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
	라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농업생산유통과 업무종합 기획조정
	2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3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4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5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6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7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8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마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7	잠업 기술 지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단장의 직급)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상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p>	<p>제3조(실·과·단장의 직급)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농업정책과</u>, <u>농촌사회과</u> 및 <u>소득지원과</u>를 둔다.</p> <p>② <u>농업정책과</u>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촌사회과</u>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소득지원과</u>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p>	<p>제8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농축산과</u>, <u>농촌사회과</u> 및 <u>소득지원과</u>를 둔다.</p> <p>② <u>농축산과</u>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촌사회과</u>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소득지원과</u>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p>

첨부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하 동 군 공 보

(56) 제 407 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첨부 2 **직 제 순 서**

○(개편배경) 성장동력, 현장·실천중심 사업부서 전진배치

○(직급순위) ①4급②5급③6급

○(규모순위) ①본청(항구/한시기구)②직속③사업소

○(기능순위) ①컨터롤②관광③경제④복지⑤민원⑥지원⑦현장⑧한시

구분	현행 직제순서	개편 직제순서
본청	①기획감사실 ②주민복지실 ③민원과 ④행정과 ⑤남해안개발과 ⑥문화관광과 ⑦경제수산과 ⑧도시건축과 ⑨재무과 ⑩통상교류과 ⑪산림녹지과 ⑫안전총괄과 ⑬건설교통과 ⑭녹색환경과 ⑮규제개혁추진단	①기획감사실 ②문화관광실 ③안전총괄과 ④경제수산과 ⑤주민복지과 ⑥행정과 ⑦민원과 ⑧재무과 ⑨산림녹지과 ⑩건설교통과 ⑪국제통상과 ⑫환경보호과 ⑬도시건축과 ⑭남해안개발과(한시) ⑮규제개혁추진단(한시)
직속	⑯보건소 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⑯보건소 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사업소	⑱체육시설사업소 ⑲상하수도사업소	⑱체육시설사업소 ⑲상하수도사업소

첨부 3

부서 및 읍면별 정원조정 내역

부서명	정원조정내역			사유
	당초	변경	증감	
계	627	627		
기획감사실	18	17	△1	교부세산정1, 슬로시티△2
주민복지실	28	24	△4	
민원과	17	18	1	정보공개1
행정과	25	29	4	아동청소년4, 비서실1, 정보공개△1
남해안개발과	16	13	△3	투자유치△3
문화관광과	17	19	2	문화재2, 관광개발1, 문광부축제△1
경제수산과	18	19	1	신재생에너지1
도시건축과	23	22	△1	디자인△1
재무과	26	26		
통상교류과	13	16	3	투자유치3
산림녹지과	14	17	3	산림휴양3
안전총괄과	15	16	1	민방위비상대책1
건설교통과	18	18		
녹색환경과	18	17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1, 녹색성장△2
규제개혁추진단	3	3		
보건소	68	67	△1	
보건소	30	30		
보건지소	24	23	△1	적량지소△1
보건진료소	14	14		
농업기술센터	48	49	1	
농업정책과	17	17		
농촌사회과	15	14	△1	농기계지원2, 농업지원△3
소득지원과	16	18	2	농산지원2
체육시설사업소	9	9		
상하수도사업소	23	23		
의회사무과	13	13		
읍면	197	192	△5	횡천,고전,양보,북천,청암 각 △1

첨부 4 **신구 조직개편(안) Table**

기존		개편		비고
실과소	담당명(87담당)	실과소	담당(88담당)	
기획감사실 (5담당)	기획,예산,감사 홍보,슬로시티	기획감사실 (4담당)	기획,예산,감사 홍보	슬로 시티
주민복지실 (7담당)	복지기획,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여성정책,아동청소년	주민복지과 (6담당)	복지기획,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여성정책	직제
민원과 (4담당)	고객만족,지적 도로명주소,부동산관리	민원과 (4담당)	고객만족,지적관리 지적재조사,부동산관리	지적 재조사
행정과 (4담당)	행정,공무원단체, 정보통신,평생학습	행정과 (5담당)	행정,공무원단체, 정보통신,평생학습, 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
남해안개발과 (5담당)	남해안기획,경제자유구역 개발,투자유치,신도시 남해안보상	남해안개발과 (4담당)	남해안기획,경제자유 구역개발,신도시 남해안보상	
문화관광과 (4담당)	문화예술,관광진흥 녹색관광,시설운영관리	문화관광실 (5담당)	문화예술,문화재 관광개발,관광마케팅 시설운영관리	문화재
경제수산과 (4담당)	경제정책,기업지원 해양개발,어업생산	경제수산과 (5담당)	지역경제,신재생에너지 기업지원,해양개발 어업생산	에너지
도시건축과 (6담당)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디자인 건축행정,건축민원,복합민원	도시건축과 (5담당)	도시계획,도시개발, 건축행정,건축민원, 복합민원	디자인
재무과 (5담당)	세정,경리,평가,세입,재산	재무과 (5담당)	좌동	
통상교류과 (4담당)	전략통상,교류협력 녹차산업,녹차연구소지원	국제통상과 (4담당)	전략통상,투자유치, 교류협력,녹차산업	투자 유치
산림녹지과 (4담당)	산림정책,산림보호 산림재해,녹지조경	산림녹지과 (5담당)	산림정책,산림보호, 산림토목,산림휴양 가로수공원	산림 휴양
안전총괄과 (3담당)	안전관리,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총괄과 (4담당)	안전기획,민방위비상대책, 복구지원,하천관리	민방위
건설교통과 (4담당)	건설행정,농촌개발 도로관리,교통행정	건설교통과 (4담당)	좌동	
녹색환경과 (5담당)	환경정책,녹색성장,환경지도 자원순환,환경시설	환경보호과 (4담당)	환경보호,환경지도 자원순환,환경시설	녹색 성장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	좌동	

하 동 군 공 보

(61) 제 407 호

당초		변경		비고
실과소	담당명	실과소	담당	
보건소	1보건소13지소14진료소	보건소	좌동	
보건소 (6담당)	보건행정,건강도시 예방의약,방문보건 진료,안전위생	보건소 (6담당)	좌동	
지소 (13)	13지소	지소 (13)	좌동	
진료소 (14)	우복(목계), 성천	진료소 (14)	목계, 성천(우복)	
농업기술센터	3과 12담당	농업기술센터	3과 13담당	
농업정책과 (4담당)	농업정책,부농육성 축산경영,가축위생	농축산과 (4담당)	좌동	
농촌사회과 (4담당)	교육인력,농업지원 농촌체험,생활지원	농촌사회과 (4담당)	교육인력,농촌관광 생활지원,농기계지원	농기계
소득지원과 (4담당)	친환경농업,특화산업 원예기술,과수특작	소득지원과 (5담당)	친환경농업,농산지원 특화산업,원예기술 과수특작	농산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2담당)	체육진흥,체육시설	체육시설사업소 (2담당)	좌동	
상하수도사업소 (2담당)	상수도,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 (2담당)	좌동	
의회사무과 (1담당)	의사	의회사무과 (1담당)	좌동	
읍면 (13읍면)	48담당	읍면 (13읍면)	좌동	

하동군 공고 제2014- 53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군정철학 「실천중심, 현장중심, 사람중심」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읍면간 정원 조정 및 직렬불부합 해소

3. 주요 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제2조의 별표)

- 기획감사실 : 행정·세무 6급 △1명
- 문화관광실 : 4급·행정·시설5급 1명, 행정5급·시설 5급 △1명
행정7급 2명, 시설8급 1명, 운전 7급 △1명,
- 안전총괄과 : 행정·세무 6급 1명
- 경제수산과 : 행정·공업·시설 6급 1명
- 주민복지과 : 행정·사회복지 5급 1명, 4급·행정·사회복지 5급 △1명

- 행정·사회복지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7급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8급 △1명, 행정·사회복지 9급 △1명
 - 행정과 : 기록연구사 △1명, 행정·사회복지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사회복지 7급 1명, 행정·사회복지·시설 8급 1명,
행정·사회복지 9급 1명
 - 민원과 : 기록연구사 1명
 - 산림녹지과 : 행정·시설6급 1명, 녹지7급 1명, 농업·녹지8급 1명
 - 국제통상과 : 행정·세무·농업 6급 1명, 행정·농업 7급 1명
행정·농업 8급 1명
 - 환경보호과 : 행정6급 △1명
 - 도시건축과 : 행정6급 △1명
 - 남해안개발과 : 행정·세무·농업 6급 △1명, 행정·농업 7급 △1명
행정·농업 8급 △1명
 - 보건소 : 식품위생 8급 △1명
 - 농업기술센터 : 행정·공업 6급 1명, 행정·세무·농업6급△1명
행정·농업 8급 1명
 - 횡천면 : 사회복지 8급 △1명
 - 고전면 : 사회복지 8급 △1명
 - 금성면 : 행정·농업·환경 7급 1명, 전화상담운영 7급 △1명
 - 양보면 : 행정·농업 7급 △1명
 - 북천면 : 행정·농업 7급 △1명
 - 청암면 : 행정·농업 7급 △1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14년 8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FAX055-880-2159,e-mail:borisu656@korea.kr)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65) 제 407 호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허수도 사업소				
총 계			627	274	67	49	9	23	13	21	17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96	270	67	24	9	23	11	21	17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시설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5	1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66) 제 40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57	79	12	7	2	3	2	7	45
	행정	12	11	1						
	세무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운전	4	2					1	1	
	행정·세무	12	5						1	6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9	10		3			1	1	14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4	13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4	2		0					2
	행정·세무·시설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사무운영	3							1	2	

하 동 군 공 보

(67) 제 40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7급 소계		180	80	19	7	3	5	5	9	52
	행정		22	15			1		3	1	2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	2						1	5
	숙기		2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운전		10	2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7	4						2	11
	행정·시설		15	10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	2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	7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하 동 군 공 보

(68) 제 40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48	65	32	4	2		2	3	40
	행정	14	9					2		3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공업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관리	3	3							
	운전	9	2		1					6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3	5		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시설	5	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4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보건·간호·의료	2		2						
	열관리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하 동 군 공 보

(69) 제 40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73	31	2	2	1	14		1	22
	행정	3	2				1			
	사회복지	16	6							10
	환경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9	8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1	1								
보건운영	4						4			

하 동 군 공 보

(70) 제 407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하 동 군 공 보

(74) 제 407 호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